

[앞면]

# 목욕장업 영업주 자율점검표

## 1. 업 소 현 황

업 소 명		신 고 번 호	제 호
소 재 지	서울특별시 서대문구		
대 표 자		전화번호(핸드폰)	

2. 점검사항 및 결과 (점검일시 : 2025. . . . . 점검자 : )

점검분야	자 율 점 검 사 항	점검결과		
		예	아니오	해당없음
시설 및 설비 기준	· 욕실, 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, 발한실을 설치하였는가 ( ① 예 ② 아니오 )			
	· 발한실 내 발열기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 설치 여부 하였는가 ( ① 예 ② 아니오 )			
	· 발한실은 내부가 잘 보이도록 되어 있는가(밀실 형태로 구획 불가) ( ① 예 ② 아니오 )			
	· 탈의실, 목욕실, 휴식실 등 구조 형태가 적정한가 ( ① 예 ② 아니오 )			
	· 편의시설 및 휴식실 내부 보이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가 (밀실 형태로 구획할 수 없음) ( ① 예 ② 아니오 )			
	· 욕조수를 순환시키는 경우 욕조수가 여과기에 들어가기 직전 위치에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 소독장치, 오존장치 또는 자외선 살균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( ① 예 ② 아니오 )			
	· 무인감시카메라(CCTV)를 설치(목욕실, 발한실, 탈의실 설치금지)할 수 있으며,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 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였는가 ( ① 예 ② 아니오 )			
청결 상태	· 목욕장 내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는가 ( ① 예 ② 아니오 )			
	· 목욕장 내 매일 1회 이상, 배수시설 및 오수조는 수시로 청소하는지 ( ① 예 ② 아니오 )			
	· 수건, 가운 및 대어복은 손님한테 세탁한 것을 제공하는가 ( ① 예 ② 아니오 )			
	· 빗은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하지 아니한 기구의 분리 비치하는가 ( ① 예 ② 아니오 )			
	· 부대설비로 좌욕기 및 훈증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 손님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소독하는가( ① 예 ② 아니오 )			
	· 목욕물은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고 수질기준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( ① 예 ② 아니오 )			
	· 욕조수를 순환시키는 경우 매주 욕조수 온도, 유리잔류염소 농도를 측정 및 기록 하는가( ① 예 ② 아니오 )			
	· 욕조수를 순환시키는 경우 매년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하는가 ( ① 예 ② 아니오 )			
	· 욕조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는가 ( ① 예 ② 아니오 )			
	· 목욕장 안의 먹는 물은 정수기를 사용한 물이거나 식품위생법 수질기준에 적합한가 ( ① 예 ② 아니오 )			

[뒷면]

점검분야	자 율 점 검 사 항	점검결과		
		예	아니오	해당없음
발한실 관리	· 발한실 안에는 온도계를 비치하고 주의사항 등 안내문을 게시하는가 ( ① 예 ② 아니오 )			
조명 환기	· 발한실, 휴게실 등 업소 내 조명도는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( ① 예 ② 아니오 )			
	· 실내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적절한 환풍시설, 정화시설 및 환기용 창이 설치되어 있는가 ( ① 예 ② 아니오 )			
기 타 위생관리	· 목욕업 신고증과 목욕 요금표를 출입구에 게시했는가 ( ① 예 ② 아니오 )			
	· 감염병 환자, 만취자 등을 입욕시키지 않는가 ( ① 예 ② 아니오 )			
	· 목욕실 및 탈의실에 만 4세(48개월)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키지 않는가 ( ① 예 ② 아니오 )			
	· 이성의 종사자 및 입욕 보조행위자를 두지 않는가 ( ① 예 ② 아니오 )			
	· 발한실 입구에 아래 해당자에 대한 입욕 주의문을 붙여 게시 여부 - 감기에 걸렸거나 만 5세 미만 또는 전신 쇠약 증세 어린이 - 수축기 혈압이 180mmHg 이상인 자 - 백내장이 우려되거나 안면홍조증 환자인 자 - 노약자·임산부·고열 환자 및 중증 심장병 환자 - 술을 마신 후 2시간 이내의 자 - 출혈을 많이 한 자			
	· 남녀 공용 발한실을 운영하는 경우 발한복을 착용한 뒤 출입하게 하는가 ( ① 예 ② 아니오 )			
	· 숙박에 이용되는 침구류 등을 비치하고 있는가 ( ① 예 ② 아니오 ) (침구류 등을 비치하여서는 안되며 다만, 대형타월 및 베개는 비치 가능)			
	· 24시간 영업하는 찜질영업소의 경우에는 22:00 이후부터 05:00까지 「청소년보호법」에 의한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(다만,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동행하거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 동의를 받은 경우 제외) ( ① 예 ② 아니오 )			
	· 청소년 출입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징구하고 있는가 ( ① 예 ② 아니오 )			
	· 영업소의 표시는 신고된 명칭(상호)과 일치하는가 ( ① 예 ② 아니오 ) (다른 업종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불가)			